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023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3
-----------------	---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5. 11. 7.

(3) 회 부 일 : 2025. 11. 1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27일 시행예정인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이 법에 따른 통합지원은 노쇠뿐만 아니라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 대한 돌봄을 포괄하고 있음.

그런데 돌봄의 개념에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 제명이 현장이나 학계에서 오히려 개념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개선이 필요하며,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심의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통합지원의 심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본계획 등 통합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돌봄보장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음.

또한 이 법은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통합지원 제공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주거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하므로 통합지원의 내용으로서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돌봄보장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 등을 규정하여 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8조의2 신설 등).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에 정신질환자를 포함하며, 국무총리 소속의 ‘돌봄보장위원회’를 신설하여 통합돌봄 관련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지원시설 범위에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을 추가하며, 통합지원 서비스에 의료기사의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영양사의 영양관리서비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을 포함하고, 주거지원서비스의 구체화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안 제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415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u>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u>일상생활돌봄</u>,	법률 제20415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u>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정의) ----- -----. 1. ----- ----- ----- ----- -----<u>일상생활지원</u>-----

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이하
“보건의료등”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
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
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
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
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
다.

3. (생 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
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
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필
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
할 것

-----.

2. -----

-----장애인, 정신질환자-----

-----.

3.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지역별 특성 및 통합지원---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생략)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전문인력의 <u>양성</u> 에 관한 사 항	7. ----- <u>양성 및 돌봄 중 사자의 처우 개선</u> ----- -
8.·9. (생략)	8.·9.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 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u>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u> 심 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 같다.	④ ----- <u>제9조의2에 따 른 돌봄보장위원회</u>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 및 시장(「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 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① ----- ----- ----- ----- ----- -----

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생략)

<신설>

7.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시·군·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시·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5. -----부서와 제25조
에 따른 전문기관 및-----

6. (현행과 같음)

7.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

-----수립하여
이를 해당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수립하여
이를 해당 시·도의회에 보고
하고-----
-----.

③·④ (생략)

제9조(추진성과의 평가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다음 연도 지역계획과 당해년도 지역계획에 따른 추진성과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계획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추진성과의 평가 등) ① --

-----제9조의2에
따른 돌봄보장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돌봄보장위원회) ① 통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돌봄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전국민 통합지원을 위한 준비 및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합지원에 관한 중
요사항으로서 제4항의 간사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
합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2. 통합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
항에 따라 설립된 전국시도
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4명. 이
경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해당 협의회에 소속된 지방
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2명을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위원 2명을

제11조(퇴원환자 등의 연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입원 또는 입소하고 있던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가 퇴원 또는 퇴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를 받아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원 또는 퇴소의 여부 등을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신청을 안내하여 퇴원 또는 퇴소 이후에도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신 설>

<신 설>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3항제2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
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
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
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
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8. (생 략)

제18조(일상생활돌봄)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
의 심신기능을 유지·향상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
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

-----사업 또는 서비스를

1. ~ 7. (현행과 같음)

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률」 제1조의2에 따른 의료기
사 등이 의료기관 및 통합지
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
시설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9.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에 따른 영양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
설에서 제공하는 영양관리서
비스

1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
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
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
의 사업

11. (현행 제8호와 같음)

제18조(일상생활지원) -----

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통합지원 대상자의 기능·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거 공간의 확보·제공 또는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지원 서비스

7. ~ 9. (생략)

<신설>

-----.

1. ~ 5. (현행과 같음)

<삭제>

7. ~ 9.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기능·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거 공간의 확보·제공 또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개조 등의 지원

2.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내 주거이전 지원

3.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가 결합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6. (생략)

③·④ (생략)

제22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② (생략)

③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통합지원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 5. (생략)

<신설>

된 주택의 공급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담조직은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및---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5.·6.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22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5. (현행과 같음)

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6. (생략)

④·⑤ (생략)

제23조(정보의 제공·활용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은 주민등록 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료급여, 국민연금·고용보험·기초연금·장애인연금, 건강검진, 의료기관 입원·퇴원, 사회복지시설 입소·퇴소, 공공주택의 입주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생략)

② 국가는 통합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실시 기관으로

활동지원정보시스템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정보의 제공·활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장애인활동 지원, 국민연금-----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할 수 있다.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비용지원 및 부담 등) ①	제28조(비용지원 및 부담 등) ①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2. 주요 검토사항

(1) 제명 변경 등

- 개정안은 제명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일상생활돌봄’을 ‘일상생활지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명, 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415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u>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u>일상생활돌봄</u>, 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이하 “보건의료등”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제20415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u>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정의) ----- -----. 1. ----- ----- ----- -----<u>일상생활지원</u>----- ----- ----- ----- -----.

□ 먼저, 현 제명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통합 돌봄의 핵심적인 분야가 ‘의료와 요양’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됨.

□ 하지만, ‘통합지원’(제2조제1호)에는 의료 및 요양 외에, 일상생활 돌봄과 주거 등도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명에 ‘의료와 요양’을 특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보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이하 “보건의료등”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3. (생략)

□ 다음, 개정안 제2조제1호에서는 ‘일상생활돌봄’을 ‘일상생활지원’으로 변경하고 있는 바, 이는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제명 및 용어 변경과 관련하여, 동 법률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직전 근거 법률 명칭 변경, 용어변경은 지방정부의 준비에 혼돈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임.

(2) 통합지원 대상자에 ‘정신질환자’ 추가 등

- 개정안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정신질환자를 추가하고(안 제2조제2호), 퇴원환자 등의 연계 시설에도 정신요양 시설 등을 추가함(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u>일상생활돌봄</u> , 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이하 “보건의료등”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 ----- ----- ----- ----- ~~일상생활지원~~ ----- ----- ----- ----- -----.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u>장애인</u>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	2. ----- ----- ----- ----- ----- ----- ~~장애인, 정신질환자~~ ----- -----

다.

3. (생략)

제11조(퇴원환자 등의 연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입원 또는 입소하고 있던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가 퇴원 또는 퇴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를 받아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원 또는 퇴소의 여부 등을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신청을 안내하여 퇴원 또는 퇴소 이후에도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 (생략)

<신설>

<신설>

3. (생략)

② (생략)

-----.

3. (현행과 같음)

제11조(퇴원환자 등의 연계)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

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법 제2조제2호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법 시행령(제2조제1항)은 통합지원 대상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 현행 체계에서는 정신질환자가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통합지원 대상자) 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쇠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세부 기준과 우선순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개정안은 이러한 연령·장애의 요건과 무관하게 정신질환자 전체를 통합돌봄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정신질환자가 통합돌봄 지원 대상임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를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며(제3조제1호), 「2024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등록되어 사례관리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자는 86,121명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례를 감안하면 실제 정신질환자 수는 상당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 >

시도	등록 정신질환자 수	사례관리자 수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
전국	86,121	3,834	22.5

- 통합지원 대상자 범위에 정신질환자를 포함하는 경우, 기존의 노인·장애인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에 인력 및 예산 등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시범사업 후 그 평가에 따라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시범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 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자·실시지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참고로, 2026년도 통합돌봄 사업 예산은 총 914억원으로, 지역돌봄 서비스 확충 620억원, 지자체 전담인력 인건비 한시 지원 192억원, 제도기반 구축 103억원 등임.

□ 그 외, 개정안은 퇴원환자등의 연계시설에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도 추가하고 있는데, 장애인 거주시설은 동 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의료시설은 동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의료기관에 기 포함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퇴원환자 등의 연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입원 또는 입소하고 있던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가 퇴원 또는 퇴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를 받아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원 또는 퇴소의 여부 등을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신청을 안내하여 퇴원 또는 퇴소 이후에도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퇴원 또는 퇴소 사실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퇴원 또는 퇴소 여부 등의 통보)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말한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생략)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통합돌봄의 대상이 되는 복합욕구자의 경우 이미 노인 또는 장애인의 범주에 포섭되며,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시행 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후 개정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 관련 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통합돌봄의 대상이 되는 복합욕구자의 경우 이미 노인 또는 장애인의 범주에 포섭되고,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시행 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 실시 등 통해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후 개정이 적절 - 장애인거주시설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기 규정,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부분은 현행법 제1호에 따라 기 포함됨
충청북도, 강원 동해시, 제주 제주시 등	- 법 제2조(정의) 제2호 “통합지원 대상자”에 정신질환자를 제외할 필요

(3) 기본계획에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포함 등

- 개정안은 통합지원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계획의 수립 시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고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현행	개정안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7. 전문인력의 <u>양성</u> 에 관한 사항 8.·9. (생략) ③ (생략) ④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u>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u> 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⑤ (생략)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 <u>양성 및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u> ----- ----- 8.·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u>제9조의2에 따른 돌봄보장위원회</u> ----- -----.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①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 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 · 협 력 방안

6. (생략)

<신 설>

7.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사는 제출받

은 시·군·구 지역계획을 지원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시·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 -----수립하여 이를 해당 시·도의회에 보고 하고-----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 먼저, 개정안(제5조제2항제7호 및 제6조제1항제7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되는 통합지원 기본계획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해야 하는 지역계획에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돌봄종사자는 통합돌봄 정책의 최일선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으로서 이들의 근로 여건과 처우를 개선시켜 돌봄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질적 제고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적정한 측면이 있음.
- 참고로, 돌봄인력과 유사한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2019년 101만명에서 2023년 139만명으로 증가하여 4년간 37.6% 확대되었는 바, 이는 고령화 심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인력이 양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의 임금 수준은 2025년 8월 기준 월평균 235만원으로, 전 산업 평균 임금 대비 59.8%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등 돌봄·복지 분야 종사자의 처우는 열악한 상황이기도 함.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체, 종사자수(2019~2023)>

(단위 : 개,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87.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체	74,964	79,176	82,141	85,361	85,591
		종사자	1,009,940	1,158,054	1,235,529	1,299,097	1,386,980
	① 거주복지시설운영업	사업체	9,018	10,328	10,706	11,038	10,879
		종사자	166,517	176,143	185,507	192,000	198,674
	②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사업체	65,946	68,848	71,435	74,323	74,712
		종사자	843,423	981,911	1,050,022	1,107,097	1,188,306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임금 수준(2025. 6월 기준)>

(단위 : 만원, %)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		2025년 8월	
	월 평균 임금	전 산업 평균 대비	월 평균 임금	전 산업 평균 대비	월 평균 임금	전 산업 평균 대비	월 평균 임금	전 산업 평균 대비	월 평균 임금	전 산업 평균 대비
전 산업	369	100	387	100	397	100	408	100	393	100
사회복지서비스업	218	59.0	229	59.1	226	56.9	232	59.2	235	59.8
교육서비스업	335	90.9	344	88.8	355	89.4	360	88.2	357	90.8
사업지원서비스업	244	66.3	254	65.6	265	66.7	276	67.6	276	70.2
보건업	384	104.1	398	102.9	410	103.3	427	104.7	438	111.5
숙박 및 음식점업	190	51.6	200	51.8	210	52.9	213	52.2	219	55.7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 조사 근로실태 부문(연평균, 전체임금총액)

□ 그 외,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입법 상황과 관련하여,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기후에너지위 소관)과 「돌봄기본법안」(이수진의 의원 대표발의, 복지위 소관)이 소관 상임위에 각각 계류되어 있음.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관련 계류 법안>

안전명	주요 내용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의원, 2205017)	- 돌봄노동자의 지위와 권리 및 처우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 돌봄노동자처우개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 -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돌봄노동자처우개선위원회 설치 - 시·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및 시·군·구 돌봄근로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 - 돌봄노동자에게 주 20시간의 최소근로시간을 보장 - 돌봄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 명시적 동의 없이 단축되거나 이용자 사정으로 중단·단축된 경우 대기수당 지급 등
「돌봄기본법안」 (이수진의원, 2213805)	- 돌봄청 설치,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 - 돌봄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 - 대통령 소속 돌봄위원회, 돌봄기금 설치, 돌봄정보관리체계 구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인력의 양성과 공급,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

□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돌봄종사자 처우 문제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연계 및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동 법의 입법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고, 돌봄·사회서비스 종사자 전반에 관한 처우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다른 법률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다음, 개정안(제6조제2항)에서는 지자체가 매년 수립·수행하는 지역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추가하고 있음.

※ 현 지역계획 수립 절차 : 시·군·구 지역계획(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수립 → 시·도지사 제출 → 시·도 지역계획 수립(시·군·구 지역계획 지원 내용 포함)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 현행은 지역계획의 수립 시 절차적 통제를 위해 통합지원 관련 기관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협의체의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20조제1항), 개정안과 같이 지역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보고를 추가하게 되는 경우 통합돌봄에 대한 지역내 인식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다만, 현재 지역 계획의 수립 절차를 살펴보면 지역계획은 1년 주기로 수립되며, 시행규칙에 따라 시·군·구 지역계획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 지역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는 바, 지역계획의 수립·제출 기한이 짧고 매년 반복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적기 제출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 방안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지역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20조에 따른 시·군·구 통합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군·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시·도 통합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한 후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관 지역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통합지원 지역계획은 1년 주기로 수립되며, 4분기 내에 수립·제출 예정으로 계획 작성 기간이 단기간으로 지자체 업무부담이 크고, 지방의회 보고를 거치도록 한 다른 입법례는 대부분 4년 주기인 경우에 해당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돌봄보장위원회’ 설치

- 개정안은 통합돌봄과 관련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책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돌봄보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2(돌봄보장위원회) ① 통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돌봄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전국민 통합지원을 위한 준비 및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합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4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통합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4명. 이 경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해당 협의회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2명을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위원 2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3항제2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5조제4항은 통합지원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책 대상과 범위가 주로 출산을 제고 및 고령사회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사항>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 반면, 통합돌봄 정책은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정책 대상의 범위와 성격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포함한 통합돌봄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통합돌봄 관련 사항을 전담하여 심의하는 돌봄보장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개정 취지는 통합돌봄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돌봄보장위원회’ 비교>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돌봄보장위원회
소속	대통령	국무총리
위원장	대통령	국무총리
위원수	25명 이내(위원장 포함)	25명 이내(위원장 포함)
위원 구성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법제처장 -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보건복지부 장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통합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4명

□ 다만, 개정안은 통합돌봄이 국토부(주거복지), 행안부(지자체 인력충원 등) 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돌봄보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수의 보건·복지 관련 법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돌봄보장위원회를 통합돌봄 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현황(보건복지부 주관)>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위원장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위원장 포함 30인 이내	국무총리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법 제10조	위원장 포함 25인 이내	국무총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3조	위원장 포함 30인 이내	국무총리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0조의2	위원장 포함 25인 이내	국무총리

- 참고로,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비법정위원회로 구성·운영 중으로, 동 위원회에는 관계부처 차관급,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및 단체장, 복지·돌봄·보건·장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바, 통합돌봄정책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이를 개정안에 따른 법정위원회의 신설 시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통합돌봄정책위원회 개요>

- **(구성) 위원장**(1인, 복지부장관)과 **관계부처 차관**(4인)·**지자체** (부)단체장(5인)·**전문가**(6인)·**전문기관**(2인) 등 **위원 17인**으로 구성

【「통합돌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 ① **관계부처**(4인: 차관급) - 범부처 통합돌봄 정책 협의

【국토부】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복지	【행안부】 지자체 인력, 지역여건 개선
【농림부】 농촌돌봄시설, 농촌여건 개선	【문체부】 여가 프로그램 확충

- ② **지자체**(5인: 광역 지자체(2개) 부단체장+기초 지자체(3개) 단체장)
- 지역 현장의견 및 건의사항 제시, 사업경험 공유

- ③ **전문가**(6인) - 정책방향, 개선방안 제안
(복지, 돌봄, 요양, 보건, 장애계 등 학계·의료계 전문가)

- ④ **전문기관**(2인) - 정책 협력기관으로서 제언

- **(운영)** '25.9월부터 위원회 구성·운영→분기별 회의 개최(필요시 추가회의)
- **(논의사항)** 통합돌봄 정책방향, 서비스·인프라 확충, 전달체계 구축·개선, 관련 법·제도 발전방향 등 **통합돌봄 관련 과제 종합 논의**

- 관련하여,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돌봄보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1억 3,750만원(연평균 2억 2,750만원) 이상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돌봄보장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9조의2)	227.5	227.5	227.5	227.5	227.5	1,137.5	227.5

주: 합계는 단수 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전문적인 위원회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위원회의 신설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및 단체 의견 >

행정안전부	○ 법 제9조의2(돌봄보장위원회)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돌봄보장위원회를 부처 소속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5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 설정* 필요 * 「행정기관위원회법」 상 위원회 설치 시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
한국장애인 개발원	○ 개정안 법 제9조의2(돌봄보장위원회) 제1항에 따라 설치될 돌봄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전 국민 통합지원을 위한 준비 및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관련 사회·경제 및 정책 환경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돌봄정책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및 “돌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원 규모와 조달 및 운용방안”으로 신설 필요

(5)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 개정안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의료기사의 보건의료서비스, 영양사의 영양관리서비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추가하고 있음(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u>서비스를</u>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보건의료) ----- ----- ----- ----- <u>사업 또는 서비스를</u>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설></u>	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의료기사 등이 의료기관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u>서비스</u>
<u><신설></u>	9.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영양관리 <u>서비스</u>
<u><신설></u>	1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

8. (생략)	<u>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u> 11. (현행 제8호와 같음)
---------	---

□ 법 제15조에서는 통합지원 체계 내에서 제공되는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료서비스, 간호사의 간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요양병원 등의 의료서비스 등 8가지 항목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규정(제15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의료기관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2.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유지·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4. 장기입원 및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등의 의료서비스
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사업
6. 방문 구강관리
7.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 개정안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¹⁾ 등이

-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①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

의료기관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영양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영양관리서비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추가하고 있음.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2조제3호)은 의사, 간호사 등과 마찬가지로 의료기사, 영양사를 보건의료인력으로 포함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보건의료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추가할 경우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법률의 주요 적용대상인 노인과 장애인의 권익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참고로, 2020년 기준 전체 영양사 149,050명 중 81,052명이 활동 중이고, 의료기사 중 2024년 기준 물리치료사는 93,324명, 작업치료사는 27,538명으로, 두 직종을 합한 재활치료 인력은 총 120,862명임.

행한다.

1.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2. 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3.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4. 작업치료사: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5. 치과기공사: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6. 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영양사 현황>

(단위 : 명)

연도	전체(A)	활동 영양사		
		소계(B)	의료기관	비의료기관
2018	141,582	74,946	9,654	65,292
2019	145,606	78,223	9,939	68,284
2020	149,050	81,052	10,384	70,668

* 출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2022년 7월), 국가통계포털(2025년 12월말 업데이트 예정)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현황>

(단위 : 명)

연도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소계
2024	93,324	27,5380	120,862

- 다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2제1호)에서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와 관련하여 의료기사의 독자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음.
- 그 외, 우리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25.8.20.)는 영양사의 영양관리서비스를 추가하는 강선우의원안과 재활서비스의 주체로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를 명시하는 이개호의원안에 대해 심사한 바 시범사업 실시 후 추가 반영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바 있음.
- 한편,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보건의료분야 서비스에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동 사업을 본문에 명시하여 통합지원을 통한 서비스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현행법은 제15조제1호에서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의료기관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안에 따른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제1호에 따른 진료서비스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요>

(내용)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인을 선택하여 일반건강관리(만성질환 등) 또는 전문적 장애관리 서비스를 받는 제도

* 치과주치의는 치과의사 1인이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제공

(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장애인 건강주치의), 시행령 제5조~제8조, 시행규칙 제7조

(사업기간) 1차('18.5~'20.5), 2차('20.6~'21.9.29), 3차('21.9.30~'24.2.), 4차('24.2~)

(참여대상)

- (장애인)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 (주치의) 서비스유형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속한 의사 중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된 의사

□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법」상 쟁점이 선행 검토될 필요가 있고, 같은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이개호 의원안)에 대한 법안소위 심의 시(8월), 시범사업 등을 거친 후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으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은 현행 제15조제1호에 기 포함되는 사항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단체 의견 >

대한 영양사협회 · 한국 영양학회	◦ 개별 맞춤형 영양서비스는 돌봄통합지원대상자가 1순위로 원하는 서비스로, 「국민영양관리법」상 영양사 업무는 모든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개별법인 「돌봄통합지원법」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명기해야 보건의료전문가인 영양사가 통합지원체계안에서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적극 찬성함.
대한 의사협회	◦ 통합돌봄은 다지역 협업이 필수이나, 특정 지역만을 선제적으로 법에 명시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위반되며 지역 갈등을 심화시킬 소지가 큼. ◦ 영양 관리 및 재활 서비스는 환자의 기저질환, 기능 저하 등 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의료적 행위이며, 단독 서비스로 오인될 수 있는 조항은 안전성을 크게 저해함.
대한한 의사 협회	◦ 개정안에 포함된 ‘의료기사 등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지도가 전제되어야 하며, 통합돌봄서비스는 대상자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지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의료기사의 독립적인 의료행위가 필요하게 되므로, 의료기사의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인정하게 될 경우 현행 의료체계에 크게 반할 뿐 아니라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및 의료사고의 위험 확대 등에 따른 환자 안전성 문제와 함께 의료직능간의 다툼이 확대될 수 있음.

(6) 주거지원 서비스 규정 별도 신설

- 개정안은 현 제18조(일상생활돌봄)에 포함되어 있던 주거지원 항목을 분리하여, 별도의 주거지원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규정함 (안 제18조의2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일상생활돌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심신기능을 유지·향상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일상생활지원)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u>통합지원 대상자의 기능·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거 공간의 확보·제공 또는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지원 서비스</u>	<삭 제>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u>

	<u>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1. 통합지원 대상자의 기능·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거 공간의 확보·제공 또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개조 등의 지원</u> <u>2.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내 주거이전 지원</u> <u>3.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의 공급</u>
--	---

□ 현행법은 주거지원을 일상생활돌봄의 한 유형으로 보아 제18조에서 가사활동 지원, 이동지원, 보조기기 서비스 등과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케어안심주택사업을 일상생활돌봄 내 주거지원 서비스로 포함하여 운영 중임.

제18조(일상생활돌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심신기능을 유지·향상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재가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등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기관 등 방문을 위하여 필요한 이동지원 서비스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기기에 관한 서비스

4.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통합지원 대상자가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적합한 시설·기관에 통원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서비스
5. 통합지원 대상자의 안전 및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위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6. 통합지원 대상자의 기능·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거 공간의 확보·제공 또는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지원 서비스
7.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하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
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9.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

□ 참고로, 「20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12개 지자체에서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1,308건이 제공된 바 있으며, 아울러 2025년 5월 기준 29개 시·군·구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가 연계 제공되는 공공주택(지원주택)으로 총 941호가 운영 중에 있음.

□ 그 외, 지원주택 운영모델 및 단기회복형 지원주택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된 바 있으며(~2025.12.), 가이드라인 확정 후 지자체 배포·설명이 예정되어 있음(2026년 1분기).

< 「20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내 주거지원 서비스>

구분	주거환경개선	케어안심주택
목적	기존 주택의 물리적 환경 안전성 및 편리성 개선(주택개조 지원)	안전한 돌봄 환경을 갖춘 거주지 확보/제공통합 돌봄 연계
지원 형태	대상자가 거주하는 자가 또는 임대 주택에 대한 개조, 수리, 설비 설치 지원	공공임대 등의 거주공간을 확보하여 주거 이전 지원
주요 대상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	지역 내 거주를 원하는 퇴원 환자 및 지역 내 거주가 불안정한 돌봄 대상자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통합지원 대상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지역과 주거환경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거지원 서비스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와 함께 통합돌봄 체계의 핵심 요소로서 향후 정책적으로도 확대·강화될 필요성이 큰 분야로 평가됨.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해당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주거’ 부분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성에 공감하나, 개정안 제2호에서 규정한 주거이전 지원은 단순 이사비용 지원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7) 전문기관과의 협력 명시

☐ 개정안은 통합돌봄 전담조직이 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 25조에 따른 전문기관과 협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계획의 내용에도 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통합지원 관련 <u>부서와</u>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① ----- ----- ----- ----- ----- ----- ----- ----- -----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u>부서와 제25조</u> <u>에 따른 전문기관 및</u> ----- -----

6. (생략)

<신설>

7.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시·군·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시·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6. (현행과 같음)

7.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
-----수립하여
이를 해당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수립하여
이를 해당 시·도의회에 보고
하고-----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담조직은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및-----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교류	----- -----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 현행은 법 제21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두고, 전담조직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개인별 지원계획 시행, 서비스 연계·조정 등 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 관리
2.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3.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조정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 및 읍·면·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한편, 법 제25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4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정책 수립 지원, 대상자 특성·유형 분석, 종합판정 지원 등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대상자의 충분하고 효율적인 발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분석 및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원 정책 수립·홍보 및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 추진성과의 평가 지원
2.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유형 분석
3. 제10조에 따른 대상자 발굴·조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조사기준 개발
4. 제12조의 종합판정

5. 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② - ③ (생략)

< 전문기관 지정 대상별 역할 >

전문기관	업무역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정책수립·홍보, 대상자 분석, 종합판정 조사 지원
국민연금공단	(장애) 대상자 분석, 종합판정 조사 지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통합돌봄 정책 지원
중앙·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자체) 정책수립 지원, 지역 돌봄 서비스 확충

□ 개정안은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한 지자체 전담조직의 협력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문기관이 통합지원 운영체계에서 통합지원 관련 기관과 함께 한 축으로 기능하도록 하여 정책 집행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현행 시·군·구 업무 내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협력 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8)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은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연계범위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추가하고(안 제22조제3항제6호 신설),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며(안 제23조제2항), 전문인력 양성·재교육 실시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② (생략)	제22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통합지원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③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정보시스템
6. (생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정보의 제공·활용 등) ①	제23조(정보의 제공·활용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은 주민등록 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료급여, 국민연금·고용보험·기초연금·장애인연금, 건강검진, 의료기관 입원·퇴원, 사회복지시설 입소·퇴소, 공공주택의 입주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생략)

② 국가는 통합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실시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8조(비용지원 및 부담 등) ①
· ② (생략)

(현행과 같음)

[illegible]

③・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③ (현재와 같음)

제28조(비용지원 및 부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법 제22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통합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통합지원의 신청, 대상자 발굴, 조사, 종합판정, 서비스 제공·연계 등 전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관리하기 위함임.

□ 또한, 법 제23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정보 연계·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통합지원 절차 운영과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기관에 통합지원 대상자를 연계하는 업무(이하“통합지원 업무”라 한다)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통합지원의 신청, 대상자의 발굴, 조사, 종합판정, 통합지원 서비스의 제공·연계등 통합지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통합지원 대상자가 입원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통합지원 대상자가 입소한 「사회복지사

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 대상자의 주거,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통합지원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3.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4. 「치매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
5.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정보 시스템
6. 그 밖에 통합지원의 신청, 대상자의 발굴 등 통합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⑤ (생략)

제23조(정보의 제공·활용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료급여, 국민연금·고용보험·기초연금·장애인연금, 건강검진, 의료기관 입원·퇴원, 사회복지시설 입소·퇴소, 공공주택의 입주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④ (생략)

□ 한편, 법 제10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자’ 등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해 통합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고, 직권으로 통합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통합돌봄 제도 간의 연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신청·발굴 및 조사 등) ①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와 그 가족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퇴원 직후의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통합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통합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와 자체조사·정보분석 등을 통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를 발굴하여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할 수 있다.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하

려는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통합지원의 내용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직권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다.

1.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인적사항, 가구특성, 거주환경
2.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현황
3.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일상생활·사회활동 수행능력,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4.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통합지원에 대한 욕구
5. 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통합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다만, 현행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법정 연계 대상 정보시스템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정보시스템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10조에 따른 대상자 발굴 및 정보 분석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되는 정보시스템에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추가하고(안 제22조),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전문기관이 제공·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정보를 추가하고 있음(안 제23조).

□ 이는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조정 등 관련 규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정보의 연계·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 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음, 개정안은 통합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실시 기관의 지정 주체를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있는데(안 제24조), 이는 통합돌봄 정책을 총괄·주관하는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확히 하여,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임.
-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되는 정보시스템을 확대하고, 시·군·구가 확인·활용할 수 있는 정보 범위에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지자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예산 상세내역, 총 914억원) ①지역돌봄서비스확충 예산 620억원, ②지자체 전담인력 인건비 한시적 지원 192억원, ③제도기반 구축 등을 위한 지원 103억원*

* 통합돌봄운영비 11억원, 기존 시범사업 지역 지원 16억원, 시스템 구축 69억원 등

- ①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예산) 지자체 특화 서비스, 돌봄 대상자 확대에 따른 신규서비스 등 지역 돌봄 확충을 위한 예산 620억원(국비 기준, 9개월)

- (지원취지) 기존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되, 그럼에도 발생하는 지역서비스의 빈틈은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예산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지역 현황에 맞게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 보완

- (지원방법) 229개 시군구를 지역상황 고려 3유형 구분하여 지원

* (구분 기준) ① 대상자 현황(고령화율 20% 이상), ③ 의료취약지역(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1) ② 노인인구 고려

구분 (보조율: 서울 30, 그 외 50%)	A그룹	B그룹	C그룹
예산(단위: 억원)	10(국비+지방비) * 9개월 7.5억원	8(국비+지방비) * 9개월 6억원	4(국비+지방비) * 9개월 3억원
유형구분	의료취약지역 & 초고령지역	의료취약지역 or 초고령지역 or 노인인구 고려	그 외 지역
개소수(단위: 개)	57	114	58

- ② (인건비) 통합돌봄 업무 담당 지자체 전담공무원 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 한시지원 192억원(국비기준, 6개월)

- 기준인력 확정 결과를 반영하여 지자체별 기준인력 수요제출 및 대상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확정 예정

- ③ (제도기반 구축)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구축 69억원, 통합돌봄 운영비(참석자 수당 등 회의 운영비) 10억원(국비기준, 10개월) 등 103억원

문 의 처

02)6788-5496
